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6.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392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1. 5. 25.
- 다. 회부일 : 2021. 5.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임
-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2-1 2,3층 ※야간보호 공간 비공개
- 시설규모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120㎡, 야간보호 공간 95.21㎡
- 주요시설
 - 상담카페 및 주간보호 공간 : 카페, 침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 야간보호 공간 : 침실2, 거실 및 주방, 사무실, 세탁·욕실 등

2)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2.1.1.~2024.12.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358백만원('21년 기준)
- 위탁사무
 -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지원
 - 청소년밀집지역 및 온라인 현장상담,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성매매 등 다층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십대여성이 낙인감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상담카페 및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를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노하우가 필요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 해당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2012.10.) 후 8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²⁾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³⁾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센터 및 상담카페 운영
 - 일시보호, 숙식제공, 세탁·샤워 등 일시생활지원 및 상담지원
 - 청소년밀집지역 및 온라인 현장상담, 지원기관 정보제공, 귀가지원 및 보호

-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3. 25.>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3)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시설 연계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및 상담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도록 운영 중인 시설로 2012년부터 총 4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음.

<센터의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경과>

- 시설명 :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 위탁법인 :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위탁기간 : 2019.1.1.~2021.12.31.(3년)
- 운영인력 : 총 6명(센터장 1명, 상담원 5명)
- 소요예산 : 357,839천원('21년 기준)
- 추진경과
 - 1차 : 2012.8.8.~2012.12.31.(5개월,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2차 : 2013.1.1.~2015.12.31.(3년,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새날에오면)
 - 3차 : 2016.1.1.~2018.12.31.(3년,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새날에오면)
 - 4차 : 2019.1.1.~2021.12.31.(3년,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⁴⁾에 따르면 센터 운영의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⁵⁾ 결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보호 실적이 감소하였고 만족

4)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 5억원 미만 사무로 종합성과 평가 미대상임.

5) 센터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

도 점수는 시설 환경 만족도 4.6점, 프로그램 만족도 4.7점으로 나타남.

<목표(계획) 대비 실적 현황>

연도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2019	일시보호(건)	2,200	3,457	157.1
	상담지원(건)	360	312	86.7
	귀가지원 및 시설 연계(건)	120	185	154.1
	온·오프라인 현장상담(건)	2,500	4,065	162.6
2020	일시보호(건)	2,200	1,479	67.2
	상담지원(건)	360	424	117.8
	귀가지원 및 시설 연계(건)	120	110	91.7
	온·오프라인 현장상담(건)	2,500	4,500	180.0

<만족도 조사 결과 및 피드백 실적>

연도	조사내용	점수	피드백 내용
2019	시설 환경 만족도 (46명)	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거리·노숙 등 위기 십대여성의 경우 속옷, 신발, 위생용품 등 필요 • 반영 : 계절옷, 신발, 생필품, 상비약 등 '비상용 생필품 가방' 지원('20년)
	프로그램 만족도 (219명)	4.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연극, 영화 등 문화 프로그램 참여 희망, 현장상담 시 시설 이용방법 등 기관소개 요청 • 반영 : 또래모임 활용 연극, 놀이공원, 영화,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소개 홍보물 및 온라인 배너 등 제작·배포
2020	시설 환경 만족도 (21명)	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코로나19로 다른 이용시설 휴관하여 갈 곳이 없어짐 • 반영 : 예방수칙 준수 및 방역 철저히 하여 긴급보호 실시
	프로그램 만족도 (114명)	4.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 호소 • 반영 :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는 생필품 지원 사업 추진, 모바일 도시락 쿠폰 발송 등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주요 성과로는 위기 십대여성 긴급 야간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시지원 서비스의 다각화를 도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시설이용의 어려움 등의 개선요청사항이 있음.

<주요 성과평가 결과>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십대여성 긴급 야간보호 시스템 구축 • 거리·노숙 십대여성 옷·신발·식품 등 ‘비상용 생필품 가방’ 지원 등 일시지원 서비스 다각화 도모 •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위해 일시쉼터 운영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위생관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일시쉼터 운영 - 독립거주 십대여성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생필품지원’ 및 모바일 도시락 쿠폰 발송 등
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소년밀집지역 등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 중단 및 온라인 현장상담은 지속성이 떨어져 지원에 어려움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돌봄 부재한 취약한 상황에서 지원기관 이용도 어려워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사회 안전망 필요

□ 사업의 필요성

-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함.
-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십대여성들은 가출, 성문제, 가정, 학교 등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십대여성을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 서비스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함⁶⁾.

6) 배화정(2014), 서울시<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 쉼터>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3), 83-111.

- 따라서 위기 십대여성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주·야간 일시보호, 일시생활지원, 귀가지원 및 상담, 기관연계 등을 하기 위한 관련분야 실무자⁷⁾로 구성되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이며, 제7조⁸⁾에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위기 십대여성의 주·야간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지원, 귀가 및 보호시설 연계, 온·오프라인 현장상담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7) 센터 인력 채용 시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따름.
 8)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주·야간전용 쉼터로 구성된 일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그 위탁사무의 내용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며 또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문 의 처

장일진 입법조사관 (02-2180-8148)